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6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2. 3. 10.
4. 회부일자 : 2022. 3. 16.

II. 제안이유

-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학교-학생-산업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참여자 간 의견수렴과 이해·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장실습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당사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함.
-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 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 할 수 있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보다 폭넓게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현장실습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당사자인 ‘학생’을 포함할 수 있게 개정함(안 제9조).
2.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이를 보고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로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별첨 2)
3.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2. 1. 28.~2. 16.)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 규제심사: 해당없음 (행정처분, 과태료, 연령제한 등 포함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자치법규·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별첨 6)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162호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현장에서의 위험한 업무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에 있어서의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¹⁾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장실습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와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²⁾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실습 지원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2021.10.20. MBC뉴스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은 인재"·학교·업체 무더기 위반」

2) 2021.12.2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표-1] 2021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안전사고 처리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학생	실습장의 책임자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음	부모님과 학교에 알림	치료비(고용주), 요양보상비(근로복지공단) 청구
학교/ 교육청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상급기관에 보고 (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학생의 치료·보상 등에 관한 지원활동

○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을 운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의 상시 운영 등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학생을 포함함으로써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중 학생에게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당하게 현장실습을 거부·중지한 뒤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장실습생의 안전보장과 학생노동 권익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대한 검토(안 제9조제2항)

○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학부모,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학생’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2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³⁾과

3) 2022년 교육부(시도교육청) : 학생이 현장실습운영회에 참여하도록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개정

「2021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⁴⁾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당사자인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2] 2021 정부(관계부처 합동)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구분	현장실습 10대 추가 개선방안
1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2	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3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
4	법령 정비를 통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5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6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규모 및 역할 확대
7	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8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지원
9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10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안전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시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장실습 학생의 사고방지와 업체의 안전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2) 학생의 안전보장에 대한 검토(안 제15조제3~5항)

○ 안 제15조제3~5항은 현장실습생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를 받은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해당 현장실습에 대한 안

4) 2021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현장실습 개선방안 : p.21 현장실습 운영 기반 강화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기준 정비 및 학생참여 확대]

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⁵⁾ 및 제166조의2⁶⁾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대피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3] 2019~2021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기업 지도점검 결과

구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권익침해			비고
	미체결 기업수	시정조치	행정처분	기업수	시정조치	근로감독 요청	
2019	1	3	0	10	9	0	
2020	0	0	0	5	5	0	
2021	0	0	0	0	2	0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실습생에 대한 권익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현장실습생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중 위험·부당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안전사고

5)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예방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과 학생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실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기타 사항

-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안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체 80개 직업계고등학교 중 20개 학교가 위원회 구성 정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표-4] 2021학년도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위반 현황

구분	학교명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총 위원수
1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23
2	고명의식고등학교	16
3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16
4	서울금융고등학교	7
5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20
6	서울로봇고등학교	22
7	서울문화고등학교	26
8	서울방송고등학교	17
9	서울신정고등학교	16
10	서울아이티고등학교	23
11	선린인터넷고등학교	21
12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	16
13	성수공업고등학교	22
14	세명컴퓨터고등학교	22
15	송곡관광고등학교	20
16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17
17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18
18	예림디자인고등학교	17
19	종로산업정보학교	37
20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18

-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자치 규범으로, 이와 같이 조례를 위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